제2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2.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2월 20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20 - 14

나. 제 출 자 : 송순효 의원 외 6명

다. 제출일자 : 2020년 2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2월 17일

2. 개정이유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장학금 지급대상 규정 명시 (안 제4조)

라. 장학생 선정 (안 제6조)

마. 장학기금 확보 규정 (안 제11조)

바. 유공자의 포상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⑴ 입법예고(2020. 2. 11. ~ 2.15.)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며, 효율적인 장학생 선정 과정 및 장학기금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강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장학금 지급대상 규정 명시(안 제4조)

○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와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로 지급대상 명확화

○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해 1회 1명만 신청,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제외

3) 장학생 선정(안 제6조)

4) 장학기금 확보 규정(안 제11조)

○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

5) 유공자의 포상(안 제12조)

※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 별첨 참고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기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추후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기존 조례	개정안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용어 정의 (제2조)	-	(제2조 4호) 새마을지도자 용어정의
장학금 지급대상 (제4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제1조) - 지역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제4조 제1항) -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와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고등학생 (제4조 제2항) -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해 1회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장학생 선정 (제6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제5조) - 구지회장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	(제6조) - 구지회장이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
장학기금 확보 (제11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제11조) -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